

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용역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공간조성 및 전시 콘텐츠 제작 · 설치
- 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최민지(☎ 02-6320-8414)
- 수요기관 연락처: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용 등 문의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 권호연(☎02-6320-84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수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한식진흥원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과업기한 : 2027년 4월 30일까지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 기초금액 : 금1,8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공간 조성 및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06. 10:00 ~ 2026.10.13. 10:00
(온라인 제출)
-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6.23.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 참가 업체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하고,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4-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고서 '9. 입찰보증금' 참조)

3. 참고사항

3-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본 입찰은 해당사항 없음)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일정

5-1. 공고기간 : 2026.09.02. ~ 2026.10.13. 10:00 까지

5-2. 가격투찰(전자) : 2026.10.06. 10:00 ~ 2026.10.13. 10:00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5-2-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2.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미투찰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3. 제안서 제출 마감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심사를 위한 제안서는 가격투찰 마감 후 5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발송 필수(주소, 발송 일자 등은 투찰 마감 후 별도 안내)

5-3-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평가 또는 녹화영상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4-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6-1. 기술평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

6-2. 1차 서류심사 : 2026년 10월 3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6-3. 2차 제안서(PT) 심사 : 2026년 10월 4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별도통보)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6-4-1.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제17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PM은 사업 총괄관리자를 의미하며, PM은 반드시 제안서에 1인을 지정 후 영문명칭 “PM”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영문명칭 “PM”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와 다수에게 표기한 경우 등 규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6-4-2.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일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6-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안내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6-4-4. (발표 보안사항 및 참관안내) 평가일 입장 시 모든 전자장비의 사용은 금지되며, 참관은 **발표자(PM)이외 1명까지** 참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7-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7-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7-2-1.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7-2-2.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7-3. 제안서 스캔 파일 1부 (USB 2매, 심사용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임직원명 기재 금지

- 7-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7-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7-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 7-7.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또는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 7-8.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 7-9.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1부

- 7-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 7-10-1.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 7-10-2.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8, 9 다운 받아 작성

- 7-11.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투입 예정 인원 전원)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7, 10 다운 받아 작성

- 7-12.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원본대조 날인 필수)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8-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 8-2-1.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8-2-2.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 8-3.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 8-3-1.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 8-3-2.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8-4.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8-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8-5-1.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8-5-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8-5-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적격심사기준」에 의합니다.
- 8-7.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 9-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하나,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제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제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제건의 총 제제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 (1) 총 제제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2) 총 제제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2. 납부장소 : 온라인 제출

9-3.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와 함께 제출

9-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약속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약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의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약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4-1.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 14-2.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4-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4-4.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승인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 14-5.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과업 수행 기타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 15-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5-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15-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5-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